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938500 대학병원의 백신 미접종 종사자 공개

진정인 ○○○

피 해 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

피진정인 A병원장

주 문

A병원장에게, 법령의 근거 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A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방역 관리 강화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한 직원에 대하여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백신 미접종 직원 명단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여 피해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보건복지부는 2021. 11. 12.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건소에서 백신 미접종 직원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실시를 포함하여 방역관리 강화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진정병원은 미접종 직원들의 비용부담 없이 원내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2021. 12. 1.부터 시행하였으며, PCR검사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지하고 부서장에게도 이메일로 부서원 중 미접종자 명단을 통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부서장이 해당 부서 내 직원들의 증상 여부 확인 및 업무배제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와 같은 복무관리를 이미 시행해 왔으며, 미접종 직원의 검사 시행 여부 확인도 방역수칙 준수 차원에서 부서장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피진정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공익의 목적을 위해 직원들을 관리하며 감염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접종 직원들에 대한 예방접종 및 PCR검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보건소의 의료기관 방역관리 공문, 피진정병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안내 공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1. 11. 15. 보건소는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안내'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백신접종을 미완료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주 1회 코로나19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은 2021. 11. 30. 전부서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 직원 코로나19 검사 실시 안내' 공문을 시행하여, 백신접종을 미완료한 종사자는 주 1회 코로나19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 백신접종을 미완료한 종사자 명단을 각 부서장에게 원내메일로 통지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같은 해 12. 1. 원내메일을 통하여 모든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 중미접종자 명단을 통지하였다.

5. 판단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와 유통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헌법 역시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라고 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그 근거로 한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는 민감정보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 다49933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혹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의 경우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는 민감정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해당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지와 상관없



이 임의로 처리될 경우 정보의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이나 명예 등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를통해 사상·신념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바, '민감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병원은 소속 직원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소속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소속 직원 개인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부서 내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방역수칙 준수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부서장에게도 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다른법령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달리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알리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적 근거 없이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알린 행위는 피해자들의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A병원장에게, 법령의 근거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 ②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 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 제1항
- ·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